

힘이되는 평생친구, 보건복지부



보 건 복 지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임신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입법예고 관련 협조요청

1. 귀 협회(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부는 임신부가 진료를 받을 경우 종별 외래 본인부담률을 각각 20%씩 인하하고, 다테아의 임신부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을 인상(70만원→90만원)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보건복지부 공고 제2016-699호, '16.11.25) 중으로 '17.1.1. 시행 예정입니다.

*임신부 코드 신설 관련,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행정예고 중(~12.26.)

3. 이에 동 개정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귀 학회(협회) 소속 회원병원들을 대상으로 입법예고 주요사항 및 관련 시스템 정비 안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오니 일선 요양기관이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대한병원협회장, 중소병원협회장, 한방병원협회장, 치과병원협회장, 대한약사회장, 대한의사협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장, 대한의원협회장, 대한치과의원협회장, 대한신생아학회장, 대한소아과학회장, 대한산부인과학회장, 대한한의학협회장

주무관 박영은 기술서기관 김한숙 보험급여과장 정통령 전결 2016. 12. 15.

협조자

시행 보험급여과-7689 접수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어진동) 보건복지부(정부 세종청사) / http://www.mohw.go.kr

전화번호 044-202-2746 팩스번호 044-202-3934 / bluee1977@korea.kr / 비공개(5)